

## EU-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협정과 한국-EU-영국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김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 A Study on the EU-UK Agreement for New Relations and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Korea-EU-UK Relations

Bong-Chul Kim<sup>a</sup>, Ho Kim<sup>b</sup>

<sup>a</sup>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sup>b</sup>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January 2021, Revised 20 February 2021, Accepted 25 February 2021

### Abstract

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Keywords:** Brexit, EU-UK Agreement for New Relations, Korea-EU FTA, Korea-UK FTA

**JEL Classifications:** F13, F15, K3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1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sup>a</sup> First Author, E-mail: bong625@hufs.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hufsho@kmu.ac.kr

© 2021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설: 2021년, 완전한 브렉시트의 시작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위한 협정이 2021년 발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의 ‘브렉시트’(Brexit) 상황이 완결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0a). 이제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며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브렉시트에 관한 논란은 국제사회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EU 내부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영향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도 많은 함의가 있다.

2013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EU 탈퇴 여부를 묻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비롯된 브렉시트 논의는(Adam, 2020), 보수당이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대로 실천되었다(Hwang Tae-Hi, 2019).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탈퇴를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약간의 차이로 앞섰는데(MacShane, 2016), 영국 사회에서 탈퇴의사를 표시한 층과 탈퇴를 반대하는 층이 노년층과 청년층,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구분되어 내부적인 충격도 컸다(Kim Myong-Yong, 2020). 영국과 EU는 2020년 탈퇴협정을 체결하고 적용단계인 이행기간을 가지는 동안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2021년부터 발효되어, 영국과 EU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출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0b).

영국이 EU로부터 탈퇴의 의사를 가지게 된 여러 배경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 부를 축적했었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질서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정서,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영국 국내 정치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런던을 중심으로 파운드(Pound)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위협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부의 독립움직임과 EU에 대한 각기 다른

정서 등도 탈퇴 논의에 있어서 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브렉시트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단일시장 아래에서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해서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금융분야에서 ‘EU 단일 패스포트’ 또는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이라고 일컬어지는(Lee Yoon-Sok, 2016) EU 동일인 원칙(EU single passport rule)<sup>1)</sup>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기존 유럽의 금융선도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와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무역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영국의 GDP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영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퇴협정과 함께 EU와 FTA 또는 경제협력을 위한 조약 등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여러 요소들이 영-EU FTA 준비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Lydgate and Winters, 2019).

브렉시트는 영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들 이외에도,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낳았다(Sońta-Drączkowska, 2018). 이러한 상황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 국제통상법 체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개별국가들과도 EU를 배제된 직접적인 무역관계 설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Holmes, 2018). 영국이 한국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EU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한-영 관계에 관한 국제법,

1) 금융분야에서 ‘EU 동일인 원칙(EU single passport rule)’은 어느 EU 회원국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설립인가를 받아 다른 회원국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양국의 국내법에도 상당한 변화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이 글은 2021년에 발효된 새로운 EU와 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측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적 근거와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한국과 같은 제3국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브렉시트 상황으로 새롭게 발효된 한-영 FTA의 내용을 기존 한-EU FTA 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향후 EU-영국-한국의 관계에 새롭게 제공된 국제법 패러다임을 이해하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

### 1. EU조약 제50조에 근거한 탈퇴절차의 시작

EU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EU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50조<sup>2)</sup>에 의하면,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그

- 2) TEU 제5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의사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통보하고 EU 및 회원국들과 탈퇴 이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의 결과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처리된다(Lee Joo-Yun, 2017). 영국의 국민투표 1년 후인 2017년 6월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공식적인 탈퇴의사를 EU에 전달하면서 EU와 영국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었다(Fabbrini, 2017).

TEU 제50조의 탈퇴조항은 회원국이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없이 EU의 통합성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기 위한 유럽헌법설립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도입되었다(Kim Seung-Min, 2017). 따라서 규정에서 구체적인 협상의 개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협상을 연장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Kim Bong-Chul, 2017). 실제로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자 유일하다(Hooton and Stone, 2016). 공식적인 탈퇴의 의사를 통보한 후 2년 이내에 탈퇴조건을 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협상기간을 연장하지도 못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기존 EU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양측이 협상기간을 연장하면서 2019년에 탈퇴협정(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영국과 EU의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의회가 탈퇴협정의 내용을 비준하면서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마무리되었고, 2020년 2월 1일부터 탈퇴협정이 발효되어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의 회원국 위치에서 벗어났다(Joe, Dong-Hee and Yoon Hyung-Joon, 2020). 다만 EU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양측의 충격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경과기간 또는 과도기간, Transition period)을 탈퇴협정에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까지의 영국에 EU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행기간은 1-2년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도 있었으나, 양측이 이행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설정된 최종일에 종료되었다.

## 2.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상황이 낳는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y)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졌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에는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과 ‘유럽연합법 직접 효력 직접 적용의 원칙’과 같은 유럽연합법상 원칙의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논제들이 포함된다(Kim Yong-Hoon, 2017). 한편, 양자간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의 출발점이 되는 국제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은 양측이 체결한 EU 탈퇴협정이다. 이 조약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 후에도 진행될 EU와 영국의 관계를 설정하는 협상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관한 국경문제 관련 의정서(Protocol)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국내법 차원의 준비도 진행하였다. 2018년 브렉시트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EU 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이 국내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EU법의 영국 내 효력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응하여 기존 EU법 및 파생 법령을 영국의 국내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으며, EU와의

협상에서 영국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탈퇴협정이 체결된 이후 영국은 EU 탈퇴협정 이행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을 제정하면서, 탈퇴협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비준하였다. 이 법은 영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존 EU 탈퇴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였다.

브렉시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의 전통적인 정서와 EU법의 기반인 대륙법(Continental Law) 정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EU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영국 사회의 판례들이 전통적인 영국법 기준의 회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heon Yun-Jin, 2019). 판례를 중시하는 잉글랜드의 영미법(Anglo-American Law) 전통에 비추어보면, 과거 영국에 없었던 사건에 대하여 EU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판결을 선례로 취급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있다.

탈퇴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영국과 EU는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정을 체결해야만 하였다. 양측은 2020년 12월 23일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새로운 EU와 영국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New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영국이 EU의 공통된 법규, 관리와 감독, 법집행에 기반한 생태계를 벗어나면서 EU 단일시장에서 오는 혜택을 잃는 현실을 고려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영국의 EU로부터 탈퇴라는 효력이 새로운 협력관계의 설정으로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EU와 영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유럽연합과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일방 당사자로 영국을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Trade

3)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이후 영국과 EU의 의회비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양측은 이러한 절차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협정을 2021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이다. 이 협정문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EU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유보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c).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관한 이 조약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기존의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는 보장만을 제공한다. 또한 대외정책이나 대외안보 및 방위조약과 같은 분야는 영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에서 다루지 않았다. 2021년부터 EU와 영국은 (제3국이나 경제권에 대한 제재 등) 대외정책 문제에 있어서 공동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유럽대륙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 생존을 위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여전히 많은 세밀한 문제들이 협상과 적응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EU와 영국의 관계는 다소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만 한다.<sup>4)</sup>

### 3. 새로운 관계협정의 구조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이 조약의 협정문 전체는 전문과 본문,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부록과 부속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은 7개의 부(Part)와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무역, 운송, 수산 등 경제분야에 관한 제2부는 6개의 과(Heading)와 그 아래에 많은 장을 두고 있다. 협정문 본문의 대체적인 구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본 협정 제1부는 총론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부는 EU와 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된 다양한 분야들(투자, 경쟁, 국가지원, 과

세투명성, 항공 및 도로운송,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어업,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협력 등)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부 제1과에 해당하는 '무역' 분야에 관한 사항들은, EU 회원국들과 영국 사이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규율을 담고 있다. 즉,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들에 대한 무관세/무할당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거래, 인권 및 노동권, 과세투명성과 국가지원과 같은 제도를 국내법과 구속력 있는 양자 분쟁해결 메커니즘 그리고 보상과 같은 수단으로 유지한다. 특히 양측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미래산업에 관한 약속을 두고 있는데, 양측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해외 안전규정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분야에서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제2부 제1과의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FTA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2부의 다른 규정들은 경제, 사회, 운송 그리고 심지어 수산업 분야에서 양측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협력을 포괄한다. 제2부 제2과와 제3과는 항공과 육상(도로)운송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결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과는 EU 시민과 영국 국적자인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사회안전과 단기비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들이다. 제5과는 어업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기반으로 양측 수역의 어군을 공동관리하는 새로운 토대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어업과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한 공동의 규율이 제공된다.

협정문은 EU 시민과 영국 국민에 대한 취급, 그리고 양측 정부 사이의 행정 및 사법적 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협정문 제3부는 형사분야의 협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이 규정되었고,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이 영국에서 효력이 없으며 양측의 분쟁은 별도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양측은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리즘에 있어서 경찰과 사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테러리즘 대응 등 안보협력에 관하여,

4) 이에 관하여, 유럽에 위치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Table 1. New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itle	Content
<b>Part One: Common and Institutional Provisions</b>	
Title I:	General Provisions
Title II: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and Definitions
Title III:	Institutional Framework
<b>Part Two: Trade, Transport Fisheries and Other Arrangements</b>	
Heading One: Trade	
Title I:	Trade in Goods
Title II:	Services and Investment
Title III:	Digital Trade
Title IV:	Capital Movements, Payments, Transfers and Temporary Safeguard Measures
Title V:	Intellectual Property
Title VI:	Public Procurement
Title VII: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itle VIII:	Energy
Title IX:	Transparency
Title X:	Good Regulatory Practices and Regulatory Cooperation
Title XI:	Level Playing Field for Open and Fair Competi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itle XII:	Exceptions
Heading Two: Aviation	
Title I:	Air Transport
Title II:	Aviation Safety
Heading Three: Road Transport	
Title I:	Transport of Goods by Road
Title II:	Transport of Passengers by Road
Heading Four: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and Visas for Short-term Visits	
Title I: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Title II:	Visas for Short-term Visits
Heading Five: Fisheries	
Heading Six: Other Provisions	
<b>Part Three: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b>	
Title I:	General Provisions
Title II:	Exchanges of DNA, Fingerprints and Vehicle Registration Data
Title III:	Transfer and Processing of Passenger Name Record Data
Title IV:	Cooperation on Operational Information
Title V:	Cooperation with Europol
Title VI:	Cooperation with Eurojust
Title VII:	Surrender
Title VIII:	Mutual Assistance
Title IX:	Exchange of Criminal Record Information
Title X: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t Financing
Title XI:	Freezing and Confiscation
Title XII:	Other Provisions
Title XIII:	Dispute Settlement
<b>Part Four: Thematic Cooperation</b>	
Title I:	Health Security
Title II:	Cyber Security
<b>Part Five: Participation in Union Programmes, Sound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Provisions</b>	
<b>Part Six: Dispute Settlement and Horizontal Provisions</b>	
Title I:	Dispute Settlement
Title II:	Basis for Cooperation
Title III:	Fulfillment of Obligations and Safeguard Measures
<b>Part Seven: Final Provisions</b>	

Source: New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2020).

양측은 영국이 생긴 조약에서 벗어난 비 EU 회원국이며 기존에 활용하던 시설들과 다른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전능력의 수립에 주목하였다. 안보 협력안은 영국이 EU 인권협약을 위반할 경우 유예될 수 있다.

본 협정문 제5부에서는 (영국의 재정적 기여도에 따라서) 영국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 EU의 대표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부는 분쟁의 해결과 수평적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도 협정문에 포함되어, 양측의 협력관계가 법적 확실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사업체, 소비자, 개인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였으며, 협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협의회를 통한 이 협정의 해석과 부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본 협정의 체결로 명확해진 것은, 영국 경제가 기존 EU 단일시장(Single Market)에 포함되지 않고 영국 사회도 기존 EU법의 공동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인력, 재화,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은 중단되며, EU와 영국은 서로 다른 법체제로 규율되는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국경을 넘는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문은 물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유화를 위한 전통적인 FTA의 범주를 포함하여, 단일시장 개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양측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 Ⅲ. EU-영국-한국의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

#### 1. 한-영 무역관계에 관한 양자간 FTA의 체결

브렉시트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며, 영국은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의 대외무역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은 이제 '한국-EU 회원

국 무역'이 아니라, '한국-영국 무역'이라는 관계에 놓인 것이다. 브렉시트 논의가 지속되면서, 영국과 한국의 정부는 한-EU FTA를 기반으로 제공되었던 특혜를 지속하고 양국의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Soprano, 2019).

한국 정부는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영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통상절차법<sup>5)</sup>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 공정회, 국회보고까지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부터는 양국의 무역작업반이 한-영 FTA 추진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수행하였다. 2019년 1월부터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었고(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a), 빠른 협상 결과, 2019년 8월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2019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의 비준절차까지 이루어져, 적용을 위한 국내법적 준비는 완료되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b).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에 따라서 이행기간 중에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체계에 잔류하므로,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영 무역활동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었다. 당초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다시 이행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었다.<sup>6)</sup> 그러나 양측은 이행기간의 연장이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결국은 예정대로 완전한 탈퇴와 EU-영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협정이 체결/발효되면서, 영국에 대한 EU법 적용이 완전하게 해제되었고 한-영 FTA도 기존 설계대로 자동발효되었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한국 정

5) 통상절차법은 한-미 FTA의 제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국내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FTA와 같은 중요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반면에 탈퇴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마련된 영국 국내법인 EU 탈퇴협정이행법 제33조는 이행기간 연장을 금지하였다.

부가 통상환경 위험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한국에게는 EU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의 무역상대국인 영국이 브렉시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한-EU FTA가 제공하였던 특혜적인 통상환경을 한-영 FTA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연속하여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를 빠르게 진행하였다(Sohn Soo-Seok, 2019).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sup>7)</sup>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아시아 최초로 체결된 한-영 FTA가 대표적인 결과물이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c).

## 2. 한-영 FTA 협정문의 구조

한-영 FTA의 정식 명칭은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이다. 본 협정의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 그리고 부록과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본 협정의 서문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이나 투자의 증진과 같은 이 조약의 체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WTO 체계와의 조화 등 국제사회의 다자규범 체계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밖에 서문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노동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 등, 이 FTA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협정 전반의 원칙은 협정의 작동원리인 동시에 향후 협정의 해석과 재협상 단계에서 의제로 활용될 것이다. 한-영 FTA의 각 장 구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한-영 FTA 제1장은 3개의 조항을 통하여 목적과 일반적인 사항의 정의규정을 두었다. 제2장과 제3장은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 각

장에는 부속서, 부록, 양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2장 상품무역에 관한 부속서와 부록은 이 협정문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수준에 관한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7장의 내용도 그러하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세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규정들이다.

협정문의 제8장은 무역활동에 필수적인 지급과 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9장은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속서 9에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장부터 제13장까지는 각각 경쟁, 투명성, 무역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규정하였다. 이밖에 제14장은 분쟁해결에 관한 중재 등의 규정, 제15장은 무역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분야에 관한 작업반 설치, 예외와 발효조건에 관한 최종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한-영 FTA는 본문 이외에도 협정의 원활한 활용과 효력의 확대를 위하여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가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양국은 한-영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약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도 정부조달 양허개신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Deal Brexit)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한-영 FTA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영국은 고속철도 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 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d).

7) 당시 한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연장 등 다양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Table 2. Korea–UK Free Trade Agreement**

Title	Content
<b>Chapter One: Objectives and General Definitions</b>	
<b>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b>	
Annex 2–A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nex 2–B Electronics	
Annex 2–C Motor Vehicles and Parts	
Annex 2–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b>Chapter Three: Trade Remedies</b>	
Annex 3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b>Chapter Four: Technical Barriers to Trade</b>	
Annex 4 TBT Co-ordinator	
<b>Chapter F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b>	
<b>Chapter Six: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b>	
<b>Chapter Seven: 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b>	
Annex 7–A Lists of Commitments	
Annex 7–A–1 United Kingdom Lists of Commitments in Conformity with Article 7.7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Annex 7–A–2 United Kingdom Lists of Commitments in Conformity with Article 7.13 (Establishment)	
Annex 7–A–3 United Kingdom Lists of Reservations in Conformity with Article 7.18 and 7.19 (Key Personnel and Graduate Trainees and Business Service Sellers)	
Annex 7–A–4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Conformity with Articles 7.7, 7.13, 7.18 and 7.19	
Annex 7–B MFN Treatment Exemption	
Annex 7–C List of MFN Exemptions	
Annex 7–D The Additional Commitment on Financial Services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ostal Reform Plan	
Understanding Concerning Specific Commitment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Understanding on Regulations Relating to Zoning,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standing on the Article 7.5.2(a) Footnote 5	
<b>Chapter Eight: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b>	
<b>Chapter Nine: Government Procurement</b>	
Annex 9 BOT Contracts and Public Works Concessions	
<b>Chapter Ten: Intellectual Property</b>	
Annex 10–A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nnex 10–B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romatised Wines and Spirits Understanding on Footnote 14 to Article 10.30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b>Chapter Eleven: Competition</b>	
<b>Chapter Twelve: Transparency</b>	
<b>Chapter Thirtee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b>	
Annex 13 Cooperation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Chapter Fourteen: Dispute Settlement</b>	
Annex 14–A Mediation Mechanism for Non-tariff Measures	
Annex 14–B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Annex 14–C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Arbitration Panels and Mediators	
<b>Chapter Fifteen: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b>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Sourc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2019).

### 3. 한-영 FTA와 한-EU FTA 협정문의 비교 및 양 협정의 관련성

한-EU FTA가 전체 15개의 장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한-영 FTA 협정문의 대체적인 구성은 한-EU FTA의 협정문과 유사하다. 양 FTA의 각 장 순서와 명칭도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영 FTA의 내용이 한-EU FTA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영 FTA 조항들은 한국과 영국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한-EU FTA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나아가 한-EU FTA의 기준과 연동하여 규율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영 FTA 제2장의 합의로 양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원칙적으로 한-영 FTA에 한-EU FTA의 양허표를 적용하며, 한-영 FTA에 의한 관세인하의 시작 시기를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영국 시장에 무관세 혜택을 수출하기 위한 기준들을 한-EU FTA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영국 수출에서 전체 상품들의 99.6%를 무관세로 취급하고 있는데, 한-영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한-영 FTA는 한-EU FTA의 일반적인 특혜제공의 효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영 FTA는 상품무역에 관한 제2장에서 제 2.15조의2(경과규정)를 통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에 대한 한-EU FTA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영 FTA의 특혜관세 대우를 중단하지 않고 부여하거나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브렉시트가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산지에 관하여도 한-영 FTA는 한-EU FTA의 혜택이 한-영 FTA에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EU를 원산지로 하는 원료와 부속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하였고,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 후 당사국에서 후속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EU에서의 작업 또는 가공을 3년 한시적으로 역내 작업 또는 가공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다(한-영 FTA 원산지정의서 제3조). 이러한 원산지에 관한 양국의 합의는,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 및 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원산지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EU를 한-영 FTA의 역내에 포함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역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영 FTA 원산지정의서 제13조). 이러한 한-영 FTA의 합의들 역시 기존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융통성 있는 규율을 부여한 것이다.

한-영 FTA 중에서 이전의 한-EU FTA의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EU FTA에서 설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영 FTA에서 설정한다든지, 한국과 영국의 양국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품목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업분야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양국은 기존 한-EU FTA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영국은 주류 2개 품목, 한국은 농산물과 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은 한국의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이며,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등 2개 품목이다. 이는 EU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국의 입장과 한국과의 무역특성을 반영

한 결과이다.

한-영 FTA와 한-EU FTA가 유사한 규정들을 통하여 비슷한 수준의 자유무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한-영 FTA와 한-EU FTA 협정문에서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Ostaszewski, 2018). 한-EU FTA 체결 당시에는 과제로 남아 있었던 사항들이 한-영 FTA에는 양국이 10년 사이의 상황변화를 확인하여 완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EU FTA 체결 당시에 한국의 우편 서비스를 개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한-영 FTA는 '대한민국의 우편 개혁 계획에 관한 양해'를 두어 한-EU FTA 협정문에 언급된 우편개혁계획 상의 조치들을 한국이 완료하였음을 양국이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IV. 결어: EU-영국-한국에 주어진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

브렉시트로 인하여 한국-EU-영국의 삼자간 관계에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이 출현하였다. 기존의 관계에 활용되었던 규범들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되어야 한다. EU-영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협정의 체결은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무역 및 경제관계에 적용되었던 한-EU FTA가 한-영 FTA로 대체되는 것도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약들의 체결과 적용대상의 변화들은 기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국제법 패러다임 모두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충격이다.

한-EU FTA가 법적기반성을 확장하여 무역이나 경제협력에 연계된 안보와 같은 비경제분야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Kim Bong-Chul, 2018a), 장기적으로는 한-영 FTA의 개정으로 그러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영 관계에서 국제법 법원(法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2010년 한-EU FTA와 함께 양측에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법적기반이 되었던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처럼(Harrison, 2013), 새로운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이 가진 기능의 재발

견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기존 한-EU 기본협정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며 한-영 협력관계 일반을 아우르는 한-영 사이의 조약이 없으므로, 기존 양자간 협정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EU의 군사작전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EU 위기관리 참여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aimed at facilitating Korea's future participation in EU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operations)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영국은 UN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안보에 관하여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강국이고, 한국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은 한-EU 위기관리 참여협정의 당사국에서 배제되므로,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과 영국이 함께 참여하거나 양국 사이에 개별적인 협력에 필요한 국제법 근거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편 한-EU 차원의 조약들과는 별도로, 한국과 EU 회원국은 개별적인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자조약으로 한-EU 차원의 협정이 규율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논제까지 규율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조약은 EU 회원국의 개성을 반영하여 한국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관심 분야와 민감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Kim Bong-Chul, 2018b). 한국과 영국 사이의 양자조약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한-EU FTA와 같은 집단적 협정과 함께 개별적인 양자협정도 활용하였다. 한-영 FTA의 규정은 한국과 영국 사이의 투자문제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한-영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보다 자세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영 BIT의 규율에 양보하였다(Kim Bong-Chul, 2020).

한-EU FTA와 한-영 FTA 모두 존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규정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의제들은 환경, 노동, 인권, 공정무역, 개발협력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

양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한-EU FTA는 이전 FTA들이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지속가능성’ 논제를 협정문 제13장에서 별도로 부각시키며 규정을 두었다(Marín Durán, 2013). 향후 당사국들의 노력으로 구체화 및 조정가능성도 충분하다. 브렉시트 이후 체결된 EU-영국 사이의 협정처럼, 한-영 FTA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경제협정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Jung Jae-Woo and Hong Jae-Sung, 2016).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절차들도 합의하였다.

국제통상법의 트렌드에 따라서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미래의 한-영 FTA는 보다 종합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으로 발전할 것이며 동시에 한-EU FTA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양국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율하던 다른 국제법들도 그 내용이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조약들의 체결가능성도 충분하다.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한-영 양국에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한-EU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법분야에서 이를 위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dam, R. G. (2020), *Brexit: Causes and Consequences*, Cham, Switzerland: Springer, 66.
- Cheon, Yun-Jin (2019), “Legal Aspect of Brexit”, *Kangwon Law Review*, 58, 773.
- European Commission (2020a, December 24),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tecting European Interests,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tinued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Press Release), Brussels: Author.
- European Commission (2020b), *EU-UK Relations: from the UK Referendum to a New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 Timeline*, Brussels: Author.
- European Commission (2020c),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A New Relationship, with Big Changes - Brochure*, Brussels: Author, 1.
- Fabbrini, F. (2017), Introduction, In F. Fabbrini (Ed.), *The Law & Politics of Brexit*,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7.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 (2019).
- Harrison, J. (2013),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Framework for EU-Korea Relations. In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ted Kingdom: Edinburgh University Press, 3.
- Holmes, P. (2018), “Trade and Regulation in Relations with the EU and Third Countries after Brexit”, In B. Vickers and S. Khorana (Eds.), *Navigating Uncertainty: Towards a Post-Brexit Trade and Development Agenda*, London: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20.
- Hooton, C. and J. Stone (2016, July 26), “Brexit: Article 50 Was Never Actually Meant to Be Used, Says Its Author”, *The Independent*.
- Hwang, Tae-Hi (2019),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EU and the UK Competition Law after Brexit”,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26(1), 455.

- Joe, Dong-Hee and Hyung-Joon Yoon (2020), “Brexit Begins: Implications and Issues”, *KIEP World Economy Today*, 20(2), 1.
- Jung, Jae-Woo and Jae-Sung Hong (2016),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South Korea’s Bilateral FTA with United Kingdom after Brexit”,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2(5), 693-694.
- Kim, Bong-Chul (2017), “Legal Effects and Issues on the Brexit”, *Kangwon Law Review*, 50, 132-133.
- Kim, Bong-Chul (2018a), “The Evolution of Korean FTAs and Rediscovery of the Legal Function”,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79, 174-178.
- Kim, Bong-Chul (2018b),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Eastern Europe: The Legal Infrastructure on the Korea-Visegrád Relationship, In Bong-Chul Kim, Tomasz Wierzbowski, Ha-Yann Lee and Ewa Motylinska (Eds.), *Selected Issues in the EU-Korea Relations*, Seoul: HUFs Knowledge Contents and Press, 62.
- Kim, Bong-Chul (2020), “Comparison and Prospect of the Korea-UK FTA and the Korea-EU FTA from the Leg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11(2), 218-220.
- Kim, Myong-Yong (2020), “Prospect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European Constitution*, 32, 31-32.
- Kim, Seung-Min (2017), “Brexit: An Analysis on Legal Procedure for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2(1), 14.
- Kim, Yong-Hoon (2017), “The Brexit and the Legal Status of European Union Law in the Level of Member States’ Domestic Area”, *European Constitution*, 24, 2.
- Lee, Joo-Yun (2017),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Brexit under the TEU and Its Effects upon UK Law”,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46, 115-117.
- Lee, Yoon-Sok (2016), “Implications of Brexit and Korea’s Response”, *Weekly Financial Brief*, 25(25), 4-5.
- Lydgate, E. and A. Winters (2019), “Deep and Not Comprehensive? What the WTO Rules Permit for a UK-EU FTA”, *World Trade Review*, 18(3), 472-474.
- MacShane, D. (2016), *Brexit: How Britain Left Europe*, London: I. B. Tauris, 15.
- Marín Durán, G. (2013), Innov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in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In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ted Kingdom: Edinburgh University Press, 124-125.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a, January 29), *Preparing for No-Deal Brexit, Korea Pushing an FTA with the UK* (Press Release), Sejong, Korea: Autho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b, October 28), *Korea-UK FTA Ratified by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Press Release), Sejong, Korea: Autho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c, June 10), *Korea-UK FTA Agreed Preparing for No-Deal Brexit* (Press Release), Sejong, Korea: Autho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d, August 23), *Korea-UK FTA Signed: Securing Stability of Trade with the UK in Case of No-Deal Brexit* (Press Release), Sejong, Korea: Author.
- Ostaszewski, P. (2018), “Brexit and Britain’s Relation with South Korea”. In A. 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11.

- Sohn, Soo-Seok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Brexit on Korea's Exports to Great Britain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37(4), 118.
- Sońta-Drażkowska, E. (2018), “Brexit as a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me: Project Management Perspective”, In A. 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54.
- Soprano, R. (2019), “Brexit and the EU-UK Free Trade Agreement: Dos and Don'ts When Drafting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8(2), 96-97.
-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 (2020), OJ L 444, December 31, 2020, 14-1462.